#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07 -제45호

제출연월일 2007. 6. 7. 제 출 자 사 천 시 장

#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제안이유

법령제명 낫표 표시 및 용어의 명확한 표기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변경함(안 제명)
  -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
    - ⇒ 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- 나. 법령제명 낫표표시 및 개정된 법령 조항 수정(안 제1조)
  - 청소년기본법 제13조 ⇒ 「 청소년기본법」제11조

#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07. 5. 1 ~ 5. 21)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# 사천시 조례 제 호

#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중 "청소년기본법 제13조"를 "「청소년기본법」제11조"로 하고, "사천시청소년위원회"를 "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중 "시장"을 "사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한다)"으로 하고, "교육장"을 "사천교육청교육장"으로 하며, "경찰서장"을 "사천경찰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: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	제명 : <u>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</u>
운영조례	및 운영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청소년기본법</u>	제1조(목적) 「 <u>청소년기본법」</u>
<u>제13조</u>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	제11조
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<u>사천시청소년</u>	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
<u>위원회</u> (이하"위원회"라한다)를 구성	
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	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구성) ①(생 략)	제2조(구성) ①(현행과 같음)
②위원장은 <u>시장</u> 이 되고, 부위원장은	②사천시장(이하 "시장" 이라한다)
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
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	3
구분하고, 당연직위원은 <u>교육장</u> ,	사천교육청교육장,
<u>경찰서장</u> 이 되며, 위촉위원은 관계	<u> 사천경찰서장</u>
행정기관 공무원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,	
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	
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

# 관계법령 발췌

### 【청소년기본법】

- 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.
  -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.
  - ③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·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